

**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** (제58조의2제1항관련)

1. 타조

가. 생체검사

- 1)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타조를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.
- 2) 타조는 개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, 검사대상 타조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타조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.
- 3) 생체검사전에 죽은 타조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.
- 4)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.
  - 가) 타조의 자세·거동·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.
  - 나)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.
  - 다) 필요한 경우 눈꺼풀·비강·구강 및 항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.
- 5) 검사관은 생체검사 실시결과 이상이 있는 타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6) 검사관은 검사결과 다음의 어느 해당되는 타조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가) 단독·앵무병·탄저·살모넬라균감염증 및 바이러스성뇌염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타조
  - 나) 현저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상풍·패혈증·농독증·뇨독증·황달·수종·종양·전신쇠약·전신빈혈증·이상고열증상 또는 주사반응(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한한다)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타조
  - 다) 항생물질 또는 합성항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약물의 특성에 따른 권장 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출하된 타조

나. 해체검사

- 1) 도축된 타조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.
- 2) 심장·폐·간 및 신장은 축진 및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하고, 그 밖의 모든 흉강·복강장기는 육안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한다. 다만, 비정상적인 지

육이나 내장 등은 확인검사를 위하여 격리할 수 있다.

3) 검사내용

- 가) 패혈증·농독증·관절염·염증·폐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
- 나) 불완전 방혈 도체, 이물질 오염 도체, 부패 도체 또는 복부팽만 도체인지의 여부
- 다) 정상적인 장기의 제거상태 확인
- 라) 내부장기·조직 및 체벽을 검사하여 병변·삼출물 또는 이물질 오염 여부

4)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

| 검사대상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폐기범위 |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부   | 전체 | 폐기세부내용     |
| 기낭염      | 국소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감염조직 폐기    |
|          | 기낭의 염증부위가 과도하거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    |      | ○ 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빈혈       | 식용에 적당하지 않을 만큼 심한 경우              |      | ○ 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탄저       | 도체와 가죽·깃털 및 내장 등 모든 생산물 폐기        |      | ○ 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관절염      | 국소적·구조적 변화가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감염부위 폐기    |
|          |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생물체제의 잔류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타박상      | 국소적, 표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감염부위 폐기    |
|          | 전신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중추신경 장애  | 우울, 졸음, 혼수, 비틀거림, 선화, 근육경련        |      | ○ 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도축과정중 오염 | 국소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오염부위 폐기    |
|          | 전신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사후변성     | 자연적인 표면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관련부위 폐기    |
|          | 부패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잔류물질     | 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도축금지       |
| 쇠약       | 근육의 침윤이나 지방조직의 장액성 점액성 변성을 보이는 경우 |      | ○ 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염증       | 국소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| 감염기관·부위 폐기 |
|          | 전신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신장       | 검사후 신장은 폐기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| 신장 폐기      |

|                |  |   |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|---|---|------------|
| 간              | 염증·농양·괴사·경화·종양 또는 담즙에 의한 변색, 장간염, 내장 혹은 다른 물질에 의한 오염 |   | ○ | 간 폐기       |
| 폐              | 모든 타조의 폐는 사람이나 동물의 식용으로 사용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○ | 폐 폐기       |
| 근육 염증·퇴화 또는 침윤 | 국소적  | ○ |   | 감염부위 폐기    |
|                | 전신적 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종양             | 국소적  | ○ |   | 감염기관 폐기    |
|                | 전이성, 전신적, 조류백혈병복합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기생충증           | 국소적  | ○ |   | 감염기관·부위 폐기 |
|                | 전신적 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색소 침착          | 국소적  | ○ |   | 감염부위 폐기    |
|                | 전신적 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기타             | 병리조직학적,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적으로 검사결과 식용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      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
#### 다. 실험실 검사

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의뢰할 수 있다.

- 1)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.
- 2) 식육중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.

## 2. 오소리

### 가. 생체검사

- 1)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동물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.
- 2) 검사대상동물이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동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.
- 3)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.
  - 가) 동물의 자세·거동·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.
  - 나)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.

- 다) 필요한 경우 눈꺼풀·비강·구강·항문·직장검사를 실시한다.
- 4)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5) 생체검사 이전에 죽은 동물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.
- 6) 검사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한다.
  - 가) 부루세라병·광견병·탄저·출혈성폐혈증·백혈병·괴사성간균증·결핵병·연쇄간균증 또는 가성결핵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
  - 나) 현저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·농독증·폐혈증·요독증·황달·수종·중양·전신쇠약·전신빈혈증·이상고열증상 또는 주사반응(생물학적체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한한다)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동물
  - 다) 항생물질 또는 합성항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약물의 특성에 따른 권장 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출하된 동물

나. 해체검사

- 1) 도살된 동물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.
- 2) 심장·폐·간 및 신장에 대하여 촉진 및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하고, 그 밖의 모든 흉강·복강장기에 대하여 육안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한다. 다만, 비정상적인 지육이나 내장 등은 확인검사를 위하여 격리할 수 있다.
- 3) 검사내용
  - 가) 패혈증·농독증·관절염·염증·괴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
  - 나) 불완전 방혈도체, 이물질 오염도체, 부패 도체 또는 복부팽만 도체인지의 여부
  - 다) 정상적인 장기의 제거상태 확인
  - 라) 내부장기·조직 및 체벽을 검사하여 병변·삼출물 및 이물질 오염여부
- 4)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

| 검사대상                | 폐기범위 |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| 일부   | 전체 | 폐기세부내용  |
| 도축금지대상에 해당되는 동물의 도체 |      | ○  | 전체도체 폐기 |
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|   |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|
| 종양   | 양성                   | 국소적      | ○ |   | 감염기관·부위 폐기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전신적     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 | 악성                   | 국소적, 전신적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흑색증, 가성백혈병   |                      | 전신적일 경우 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타박상, 농양  |                      | 국소적      | ○ |   | 감염부위 폐기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전신적     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폐나 가슴막(흉막)·심막·복막 또는 수막의 급성염증, 창상등에 의한 폐혈증·농혈증·괴저성 혹은 심한 출혈성 장염이나 위염, 다발성 관절염과 급성신염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실질조직의 변성이나 짙은 색소침착을 보이는 황달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개선충음   | 경미한 경우               |          | ○ |   | 감염부위 폐기    |
|  | 수척하고 광범위한 범위에 진행     |         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기생충  | 국소적이며 제거 가능할 경우      |          | ○ |   | 감염부위 폐기    |
|  | 한 장기에 여러 개의 병터(아픈 곳) |          | ○ |   | 감염장기 폐기    |
|  | 전신적인 감염              |         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포낭충증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사람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로 수척하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| 도체가 부패하였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| ○ | 전체지육 폐기    |

다. 실험실 검사

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.

- 1)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.
- 2) 식육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.